**이사회 규정**

**2022. 12. 30**



**\**

2007. 6. 01 제정

2019. 3. 15 개정

2020. 11. 20 개정

2021. 10. 22 개정

2022. 4. 29 개정

2022. 12. 30 개정

**전 문**

이사회는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생존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회사의 정관 전문에 반영된 경영철학을 다음과 같이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한다.

**[경영기본이념의 실행]**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SK 고유의 기업문화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

이사회는 SK Brand의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Brand 보유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이사회는 SK Brand의 가치와 기업문화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K Brand와 기업문화를 함께 사용하는 타회사들과 상호 협력방안을 수립, 실행하도록 한다.

**제1장 총 칙**

1. **[목적]**본 규정은 에스케이(SK) 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능]**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구성]**
	* 1.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사는 이사회 내에 산하 위원회(이하 “산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전항 산하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하 위원회 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2장 회 의**

1. **[성립]**

이사회는 이사 과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1. **[구분]**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1) 각 이사가 부의 요청한 사항으로서 소집권자가 긴급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2) 이사 전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청구 한 경우

3) 기타 소집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 **[의장]**

1.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대표이사 또한 그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초 이사 선임일 기준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하거나, 이사회에서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소집권자]**

1.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2.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대행순서에 의한다

1. **[소집청구]**

1.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이사회 의장은 필요 또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한다.

3.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소집통지]**

1. 이사회 소집통지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의장이 지명한 이사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간사가 회의일자, 장소, 목적사항을 이사회 심의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와 함께 회의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안건부의]**

1. 각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이사회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안건 통보 시에는 부의취지 및 관련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의안설명]**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에 대한 설명은 그 의안을 제안한 이사나 집행임원이 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서 해당부서장 등이 할 수 있다.

1. **[감사 등의 출석]**

1.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결의**

1. **[결의방법]**

1.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규정 제16조 및 별지 『이사회 부의 기준』 제2조 제3호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승인) 및 제2조 제4호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에 관한 사항의 승인) 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2.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1. **[관계인의 출석 및 외부전문가 조력 등]**

1. 이사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임직원, 외부인사 등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이사 및 감사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임직원에게 안건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이사 및 감사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1. **[결의권의 제한]**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당해 안건에 관하여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장 직 무**

1. **[이사회 결의사항]**별지 『이사회 부의 기준』 참조
2.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본 규정에 의하여 위임 · 부여된 권한 하에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및 집행

2.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의 시행 및 집행

3.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이외의 제반사항의 결정 및 집행

4. 이사 및 집행임원에 대한 순차적인 권한의 재위임

5.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1) 회사 중장기 To-Be Model 및 달성전략

2) 연간경영계획 및 그 주요부분의 변경

3) 직전년도 말 자기자본 5% 이상의 신규투자 및 증설

4) 분기 전사 경영실적에 대한 보고

5)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운영계획(이하 “SHE 운영계획”)의 이행사항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

**제5장 이 사**

1. **[이사의 의무]**
2. 이사는 법령 및 정관에 의거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전항과 관련하여 회사 내 담당 임직원이 작성 또는 제출한 품의서, 통보서, 보고서 및 각종 회계자료 등과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외부의 관련 전문가들이 제출한 보고서 등 그리고 회사 내 산하 위원회의 의견 등을 신뢰하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사가 이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는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5.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며,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경우, 이사회는 당해 이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의 직을 사임토록 요구할 수 있다.
6.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7. 이사는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8. 이사는 업무와의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9. 이사가 본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당해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0.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감 사**

1.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관한 적법성 감사
2. 회사의 재무활동의 건정성과 타당성 감사
3.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4.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5. 외부감사인의 선임/변경/해임 및 감사활동 평가
6.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에 대한 사전 승인
7. 외부감사인의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조사 보고 수령 및 대표이사에 시정조치 요구
8. 기타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수행

**제7장 보 칙**

1. **[사무의 처리]**1. 의사록

이사회 주관부서 담당이사 또는 집행임원은 의사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본점에 비치한다.

**부 칙 (2019.03.15)**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22)**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4.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이사회 부의 기준』**

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의 소집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재무제표의 승인
5.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및 결정
6. 이사회의 연기 및 속행의 결의

산하 위원회의 구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각 산하 위원회의 선임과 해임

1. **법령/회사경영에 대한 이사회 결의 사항**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이사의 타회사 임원겸직에 관한 사항
4.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5.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 관한 사항의 승인
6.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7. 준비금의 자본금으로의 전입
8. 사채의 모집, 발행
9. 자산재평가에 관한 사항
10. 자본 감소
11.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1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등의 체결 및 해지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부여의 취소
14.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5.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16. 이익배당 한도 내의 주식소각
17. 회사의 합병/분할, 영업양수도 등에 관한 사항
18. SHE 운영계획 및 이행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19. ESG 정책의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
20. 기업지배구조헌장의 제·개정
21. **정관상 이사회 결의 사항**
22. 지점 및 사업장의 설치, 이전, 폐지
23.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등 종류주식의 발행
24. 주식의 변동사항과 그에 관한 절차
25.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결정
26.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27. 이사의 직위 결정 및 대표이사 유고시의 대행 순서
28.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한 사안에 대한 결의
29. 직전사업연도 末 자기자본 5%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 증설 및 사업의 착수, 자산의 취득
30. 자기자본의 5% 이상의 국내외 차입계약 (단, 1년 이하의 단기차입계약은 제외)
31. 자기자본의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채무면제 또는 채무인수
32. 차관계약
33. 직전사업연도 末 연결자기자본 5% 이상의 회사 주요자산의 담보제공 및 처분
34. 신규설립 포함, 직전사업연도 末 연결자기자본 5% 이상의 지분투자
35. 본 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임원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36. 주주총회에서 특별히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37. 1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 또는 기부. 단, 태풍, 홍수, 화재,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구호 제공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기부는 선 집행 후 사후 보고할 수 있다.
38. 자기자본의 5% 이상 금전의 가지급 및 금전/증권의 대여
39. 기타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사항